

배포 일시	2022. 6. 13.(월)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13일 17시 기준 상황

□ 화물연대 동향

- 총 7,05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하여 집회 중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의 약 32%가 참여
- 정상차량 운행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로 평택, 군산, 부산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 23명이 검거됨

□ 항만 등 주요 물류 동향

- 장치율(72.6%)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으며,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대비 반출입량은 30~40% 수준
-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
-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하여,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

□ 주요 조치사항

- 국토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비상 점검회의(17:00)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

참고 1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및 일일 반출입 현황(6.13 17시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			금일 10시- 금일 17시 반입 (C)	금일 10시- 금일 17시 반출 (D)	금일 반출입 (C+D)	전일 반출입 (E)	평시('22.5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5월					반입	반출	합계
부산항	592,335	471,551	462,447	79.6	78.1	70	3,944	3,113	7,057	3,915	11,988	9,616	21,604
인천항	112,921	94,488	93,926	83.7	83.2	79.1	1,421	1,585	3,006	976	5,026	4,729	9,755
광양항	110,856	66,015	65,812	59.6	59.4	61.0	0	0	0	0	2,045	1,989	4,034
평택 당진항	39,520	27,257	27,523	69.0	69.6	57.6	34	122	156	14	981	983	1,964
울산항	29,464	16,097	16,013	54.3	54.3	55.6	9	20	29	0	271	240	511
군산항	8,006	1,386	1,353	17.3	16.8	21	17	3	20	0	111	63	174
마산항	3,700	599	593	16.2	16.0	29.7	13	10	23	11	50	66	116
대산항	8,255	2,333	2,333	28.2	28.2	28.4	2	0	2	0	78	60	138
포항항	24,041	2,666	2,666	11.1	11.1	11.7	0	0	0	0	45	45	90
동해항	1,150	120	120	10.4	10.4	18.0	0	0	0	0	24	24	48
목포항	7,902	341.2	362	4.5	4.7	4.5	24.8	46.8	71.6	26	128.2	69.4	197.6
경인항	3,252	751	770	23	24	26	50	78	128	0	50	52	102
계	941,402	683,604	673,918	72.6	71.6	65.8	5,515	4,978	10,493	4,942	20,797	17,936	38,734

참고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6. 7(화)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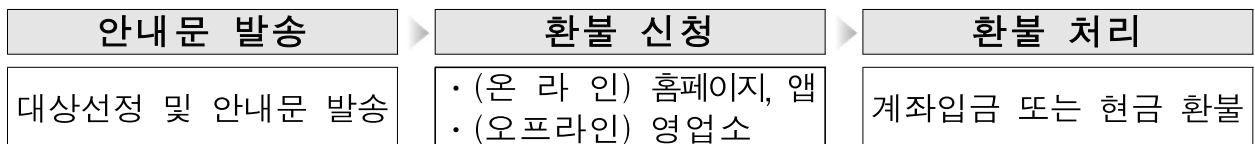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참고 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지침

I. 목적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非화물연대 운행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 (이하 “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차질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II.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대상 차량

-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 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 절단
-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 피해 기간

- 집단운송거부 발생 ~ 상황 종료시 원칙

* 다만, 집단운송거부前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지원 추진

보상 금액

- 시·군·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요청한 보상금액 지급

Ⅲ. 보상 절차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

시·군·구별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공무원·손해사정인·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

참고 4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

□ 목적

-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업무처리 기준

- (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신청일과 별개로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 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연장됨

* 허가기간 : 1차시기(6.7~6.13), 2차시기(6.14~6.20), 3차시기(6.21~6.27)

- (허가신청 기간) ‘22.5.30.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처리방법)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자동차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를 접수 한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 관할관청은 즉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

□ 업무처리 절차

- ①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② (접수·검토) 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과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정보를 확인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발급
- ③ (허가증 부착)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

< 접수관청 / 관할관청 >

